

의안번호	2212899
의 퇴 인	차규근 의원
회 답 일	2025. 9. 16.
추 계 번호	25F5005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임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한 손금산입 기준 신설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26조 추가 신설 (과다경비 등의 손금불 산입)	○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실질적인 직무수행을 한 경우로서 지급액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 - 실질적 직무수행 여부: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, 이사회 등 주요 회의 참석 횟수 및 의사결정 기여도, 해당 법인의 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기여도 등 - 지급액의 적정성 판단기준: 시행령으로 위임입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6조 추가 신설 (과다경비 등의 손금 불산입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실질적인 직무수행여부에 따라 적정성을 판단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법인세 세수 변화가 예상됨
 - 개정안은 실질적인 직무수행여부 및 지급액의 적정성 여부를 법률에 명시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을 강화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제고하고자 함
- 개정안에 따른 법인세수 변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, 상여금 및 퇴직금과 실질적 직무수행 여부를 판단할 자료 및 지급액의 적정성 기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, 정보가 부재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 - (임원의 기준)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0조제1항에 따라 법인의 회장, 사장,

- 부사장, 이사장, 대표이사,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, 합병회사,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,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, 감사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
- (임원의 인건비에 대한 제재)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기준과 한도 등을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하여 제재
 - (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)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3조제2항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·주주총회·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
 - (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)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4조제4항에 따라 임원의 퇴직급여는 정관 등에 지급액이 정해진 경우 정관 등에 정한 금액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퇴직직전 1년간의 총급여액의 10%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함
 - (퇴직급여의 중간정산)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고, 주택 구입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지급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
 - 실질적인 직무수행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부재하고 해당 기준을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 및 근거가 부족하며, 기업이 지급한 인건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입법함으로써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 - (실질적인 직무수행 판단기준) 법인에 근무하는 임원별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, 이사회 등 주요 회의 참석 횟수에 대한 개별자료는 구하기 어려우며, 의사결정 기여도나 해당 법인의 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기여도를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 및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직무수행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
 - (지급액의 적정성 판단기준) 기업이 임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개별자료를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업이 지급한 인건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시행령으로 위임입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하기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이수인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수인	02-6788-4839	suin2025@assembly.go.kr